제25차 IOTC 연례회의 참석 결과

2021. 6.

한국원양산업협회
해외수산협력센터

Ⅰ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제25차 IOTC 연례회의(S25)*

* 영문명 : 25TH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

□ **회의 목적**

○ IOTC 회원국 이행평가 및 황다랑어, 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등

□ **일시/장소** : '21.5.30.(일)~6.11.(금)*/화상회의

* 제18차 이행위(CoC18), 제18차 재정위(SCAF18), 제4차 관리절차기술위원회(TCMP4) 동시 개최

회의명	기간
제18차 이행위원회(CoC18)	'21. 5. 30. ~ '21. 6. 1.
제18차 재정위원회(SCAF18)	'21. 6. 2. ~ '21. 6. 3.
제4차 관리절차기술위원회(TCMP04)	'21. 6. 4. ~ '21. 6. 5.
제25차 연례회의(S25)	'21. 6. 7. ~ '21. 6. 11.

□ **참석자**(약 100여명) : 한국, EU, 일본, 중국, 몰디브 등 IOTC 회원국

○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: 원태훈 전문관

□ **주요 의제**

○ 황다랑어 회복계획에 관한 결의(19/01) 개정 논의

○ 가다랑어 어획통제규칙(HCR)에 관한 결의(16/02) 개정 논의

○ FAD 관리에 관한 결의(19/02) 개정 논의

○ IOTC 의장 및 부의장 선출

Ⅱ 제18차 이행위원회(CoC18)

1 CoC18 주요 논의

□ 한국 불이행/부분이행 소명 내용 및 관련 논의

(1) 결의19/04 제3항(l)에 따른 수혜적 소유주 정보 누락

- **(소명 내용)** 본 조항*은 수혜적 소유주가 운영자/수요주와 다를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

  * para3 (l) : Name and address of beneficial owner(s), if known and different from vessel owner/operator or indicate non-availability

- **(논의 결과)** 본 조항의 모호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구 개정 결정 및 수혜적 소유주 정보 제공 의무화에 합의

(2) 결의17/05 제6항에 따른 상어 size frequency 데이터 미제출

- **(소명 내용)** 상어는 한국의 목표종이 아니기 때문에 1mt 이상 어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

- **(논의 결과)**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상어 선상보유금지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어 본 조항과 상충됨을 설명

(3) '19년 연승 옵서버 승선율 5% 미달

- **(소명 내용)**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한국 연승선단은 어황에 따라 대서양과 인도양을 이동하며, '19년도에는 대서양 조업이 활발함에 따라 인도양 연승 옵서버 승선율이 낮아짐

□ 잠정 IUU 목록

○ **(신규 제안)** 영국(BIOT)은 자국 수역 인근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스리랑카 선박 8척과 인도 선박 1척을 IOTC 잠정 IUU 목록에 등재 요청

- 스리랑카 어선 8척 중 5척은 영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목록 미등재

- 나머지 3척과 인도선 1척은 잠정 IUU 목록에 등재 결정

○ **(교차등재)** 타 RFMOs IUU 목록과의 교차등재(cross-listing) 규정에 따라 13척 선박 등재 결정

- 교차등재 관련, 타 기구 IUU 목록에서 해지되었을 시 즉각적으로 사무국이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됨*

* ICCAT IUU 목록에 올라 IATTC가 교차등재한 중국어선이 IATTC IUU 목록에서 IOTC로 교차등재된 사례. 본 선박은 이후 ICCAT IUU 목록에서 해지되었으나 IATTC IUU 목록에서 해지되는 기간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IOTC 사무국이 IOTC IUU 목록에서 적시에 해지하지 못함

□ 인도네시아 해상 전재 시범사업

○ **(논의 배경)** 인도네시아는 국가 옵서버를 승선한 자국 목재 운반선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제출

- 자국 옵서버 프로그램의 지역옵서버 프로그램(ROP) 통합과 결의 19/06(대형어선 전재 프로그램) 부속서5에 8척으로 제한된 자국 목재선 수를 무제한 등록 가능하도록 개정 제안

○ **(논의 결과)** EU, 일본 등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이 ROP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 제안에 반대

- 인도네시아의 시범사업 기한 연장에는 동의

□ 협력적 비회원국(CNCP) 자격 갱신

○ **(논의 배경)** 세네갈과 라이베리아는 IOTC CNCP 자격 갱신을 신청

○ **(논의 결과)** EU는 ICCAT IUU 목록에 등재되어있는 세네갈 선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, 세네갈은 목록 해지 예정이라 답변

- 이행위원회는 두 국가의 CNCP 자격 신청 승인을 위원회에게 권고

Ⅲ 제18차 재정위원회(SCAF18)

1 SCAF18 주요 논의

□ IOTC 재무규정

○ **(논의 배경)** '19년 채택한 IOTC 재무규정의 두 가지 미결 사안 결정 필요

- (1) 예산 년도 내 최종 분담금 납부일, (2) 예산 년도 내 미납금이 '연체금'이 되는 일자

○ **(논의 결과)**

번호	결정 사안	논의 결과
1	예산 년도 내 최종 분담금 납부일	6월 30일
2	미납금이 연체금이 되는 일자	7월 1일

- 회계연도 등의 사유로 6월 30일까지 분담금 지급이 어려운 국가는 재정위원회를 통해 통보

□ 탈퇴 회원국 미납금

○ **(논의 배경)** 사무국은 탈퇴한 네 국가의 미납 분담금 회수 포기를 제안

* 벨리즈, 기니, 바누아투, 시에라리온

○ **(주요 논의)** 우리나라는 사무국 제안의 의도가 미납금 회수 노력 중단인지 전면 탕감인지 설명을 요청하고, 재가입 시 절차를 질의

- 사무국은 회수 노력 중단이라 답변하고, 해당 국가들은 미납금을 모두 지급해야 재가입이 가능함을 설명

○ **(논의 결과)** 탈퇴국 미납금 회수 포기 결정

□ 미활동 회원국 분담금 산출 제외 논의

○ **(논의 배경)**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에 오랜 기간 참여하지 않은

세 국가*를 위원회 업무에 참여하기 전까지 분담금 산출에서 제외하기를 제안

* 에리트리아, 수단, 예맨

○ **(주요 논의)** 우리나라는 IOTC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기본 분담금(base contributions)을 납부해야 함을 지적하며, 본 결정을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

○ **(논의 결과)** 사무국은 본 사안을 FAO 법률자문에게 문의 예정

□ 2022년 예산안

○ 재정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시한 '22년 예산안*을 수정 없이 승인

* 약 4.01백만 달러. 우리나라 분담금(안)은 $217,762로 '21년 대비 9.8% 감소

Ⅳ 제25차 IOTC 연례회의(S25)

1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

□ 황다랑어 회복계획 조치(결의 19/01)

○ **(논의 배경)**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의 지속적인 악화와 결의19/01에 따른 어획량 감축에 면제되는 국가들로 인하여 자원회복 노력의 효과 감소

○ **(논의 내용)**

<table>
<tr><th>번호</th><th>논의 내용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연례회의 시작 전 EU와 몰디브는 각각 황다랑어 조치 개정안을 제출
- 주요 쟁점
(1) 원양 조업국 어획 감축률 : (EU) 20% vs (몰디브) 35%
(2) 공급선 이용 : (EU) 어선 5척당 2척 vs (몰디브) '24년부터 공급선 전면금지
* 두 제안서 모두 R19/01의 면제조항을 없애고 전 수역과 전 어업을 감축 대상으로 포함
- 회원국 주요 의견
<table><tr><td>세이셸</td><td>'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'17-'19년으로 변경 요청</td></tr><tr><td>한국</td><td>R19/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</td></tr><tr><td>인도, 파키스탄 등</td><td>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</td></tr><tr><td>오만</td><td>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2</td><td>EU와 몰디브는 양자 협의를 통해 제안서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</td></tr>
<tr><td>3</td><td>회의 4일 차에 EU와 몰디브는 각각 개정안 제출
- EU는 개정본에서 한국을 위한 조항*을 추가
* 3척 이하 선망선을 운영하는 CPC는 '14년도 수준에서 선망 어업량 15% 감축
- 두 제안서 모두 세이셸의 요청 반영(기준년도 '14년 → '17-'19년 변경)
- 남아공, 중국, 호주 등 국가들은 몰디브 제안서로 논의 주장, 한국은 EU 제안서 지지</td></tr>
<tr><td>4</td><td>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의장은 어획 감축률만 개정하기를 제안
- 마지막까지 이견*을 보인 EU, 몰디브, 한국이 삼자 회의를 통해 개정 초안 작성 결정
* 한국은 적은 어획량에도 불구하고 R19/01 이행을 위해 선망 노력량 60%를 감축하는 등 회복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니 추가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</td></tr>
<tr><td>5</td><td>마지막 날 총회 시작 전 EU, 몰디브, 한국의 삼자 회의 시작
- 한국은 몰디브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'14년도 전체 어획량의 13% 감축을 결정*
* 이전 조치(R19/01)에서는 어구별 감축률이 별개 설정되어 한국은 선망 어업만 15% 감축
- EU와 몰디브는 EU의 어획 감축률에 합의 도출 실패*
* (EU) 20%가 마지노선, (몰디브) 23% 주장</td></tr>
<tr><td>6</td><td>총회에서 EU와 몰디브는 EU의 감축률을 21%로 합의 후 조치 개정안 채택</td></tr>
<tr><td>7</td><td>인도네시아, 인도, 이란, 마다가스카, 오만 등 5개국 거부권 행사</td></tr>
</table>

○ (주요 개정내용)

조항	개정 내용
제1항	본 결의는 IOTC 협약수역 내 모든 CPCs에게 적용
제5항	'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,000mt 이상인 국가는 '14년 수준에서 21% 감축 - 연안 개도국은 12% 감축 - SIDS는 10% 감축
제6항	'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,000mt 이하이고 '17-'19년 어획량이 5,000mt 이상인 국가는 '14년 수준에서 21% 감축 - 연안 개도국은 '17-'19년 수준에서 12% 감축 - SIDS는 '17-'19년 평균 또는 '18년 수준 중 높은 수치에서 10% 감축
제7항	'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,000mt 이하이고 '17-'19년 어획량이 2,000~5,000mt 사이인 국가는 '17-'19년 중 최고치 초과 금지
제8항	'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,000mt 이하이고 '17-'19년 어획량이 2,000mt 이하인 국가는 2,000mt 초과 금지
9bis*	5항의 어획감축 적용 시, '17-'19년 평균 어획량이 10,000mt 미만인 원양 조업국은 '14년 수준에서 13% 감축

* (9bis) 한국에게만 적용

□ FAD 관리조치(결의 19/02)

○ (논의 배경) 케냐 등 연안국은 DFAD 수 감축 등을 제안한 FAD 관리조치 개정안을 제출

○ (논의 내용)

번호	논의 내용
1	케냐 등 연안국은 DAFD 수 감축, 금어기, 공급선 금지 등을 제안한 개정안 제출 - 한국, 일본, EU 등 국가는 개정 제안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, 본 논의는 10월 개최될 FAD 작업반 논의 후 진행해야 함을 주장 - 케냐 등 제안국은 다른 RFMOs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로 FAD 금어기 등을 채택하였음을 지적
2	몰디브 등 국가는 FAD 작업반 관련 EU의 제안에 대하여 회의론 제기 - 지난 6년간 FADWG은 한 번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에 권고 제공도 실패
3	총회 4일 차에 FAD 소작업반 개최 - 몰디브는 사무국에 IOTC가 FAD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 → 사무국은 데이터가 있지만, 관련 규정(R19/02 24항)에 따라 이행평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을 설명
4	마지막 날 케냐 등 제안국들은 개정 제안서를 소개 후 투표로 채택 강행
5	투표 결과 - 회의에 참석한 총 19개국 회원국 중 찬성 12표, 반대 5표, 기권 2표로 전체 30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채택 무산

○ **(논의 결과)** 투표 결과 발표 후 호주는 IOTC 투표 규정에 따르면 기권이 불가함을 주장

- 이에 논란이 일자 본 사안은 FAO 법률 자문에게 문의하기로 결정

□ 기타 결의안 개정 논의

<table>
<tr><th>결의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결의16/02 - 가다랑어 어획 통제규칙(HCR)</td><td>- (제안 국가) EU, 몰디브
* EU, 몰디브 각자 제안서 제출
- (논의 배경) 가다랑어 어획한도의 지속적인 초과가 발생하자 HCR에 따른 가다랑어 관리목표 준수 필요성 제기
- (논의 내용)
· 양국 제안서 주요 제안
<table><tr><th>EU 제안서</th><th>몰디브 제안서</th></tr><tr><td>513,572mt 어획한도 설정</td><td>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</td></tr></table>→ S25는 황다랑어 논의를 우선하여 가다랑어 제안서에 대한 심층 논의 불가
- (논의 결과) 몰디브 개정안 문구를 shall에서 may로 바꾸어 채택</td></tr>
<tr><td>결의13/04 - 고래목 보호</td><td>- (제안 국가) 한국
- (논의 배경) 한국은 선망 어업에만 적용되는 고래목 보호 조치를 예방적 조치로서 연승 어업에도 적용 제안
- (주요 의견)
· (일본) 예방적 조치 원칙에 동의하나 본 원칙은 자원상태가 위험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. 인도양 고래목은 위험하지 않음
· (몰디브) 제안서에 동의하나 예방적 조치 주장에 다중잣대 적용하는 모습에 우려
· (EU, 영국, 호주 등) 본 개정안에 지지하며, 자망 등 기타 어구도 포함 주장
- (논의 결과) 논의 시간 부족으로 회기간 논의 지속 결정</td></tr>
<tr><td>결의19/06 - 대형어선 전재</td><td>- (제안 국가) 인도네시아
- (논의 배경) 인도네시아 목재 운반선 관련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ROP와 통합을 제안
- (논의 내용)
→ 이미 이행위에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의 ROP 통합은 불가 결정
→ 이에 인도네시아는 R19/06 부속서5의 인니 목재 운반선 수를 8척에서 12척으로 증가하고 시범사업 기한을 3년('21~'23) 연장 제안
- (논의 결과) 인도네시아의 개정안 채택</td></tr>
</table>

2 기타 논의

□ 협력적 비회원국(CNCP) 자격 신청

○ **(논의 배경)** 이행위원회(CoC18)는 세네갈과 라이베리아의 CNCP 자격 갱신 신청을 승인하기를 위원회에게 권고

○ **(논의 결과)** 연례회의에 참석한 세네갈의 신청은 승인되었으나,

- 신임장 문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라이베리아는 IOTC 규정*에 따라 CNCP 자격 신청 거절

* IOTC 규정은 신청국이 연례회의에 참석해야 CNCP 자격이 수여되도록 명시

□ IUU 선박 목록

○ CoC18에서 채택한 잠정 IUU 목록 개정 없이 채택

□ 의장 및 부의장 선출

○ 총회

- 의장 : 한국 김정례 주무관
- 부의장 : 몰디브 Adam Ziyad(연임)
- 제2부의장 : 남아공 Qayiso Mketsu

○ 이행위원회

- 의장 : 프랑스 Anne-France Mattlet(연임)
- 부의장 : 인도네시아 Indra Jaya(연임)

○ 재정위원회

- 의장 : 몰디브 Hussain Sinan(연임)
- 부의장 : 파키스탄 Muhammad Fshan Khan(연임)